

예 산 총 칙

제 1 조 201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총 계	4,312,922,747	129,387,681
일 반 회 계	3,755,533,573	112,666,007
특 별 회 계	557,389,174	16,721,674
공기업특별회계(지역개발기금)	308,893,858	9,266,815
기 타 특 별 회 계	248,495,316	7,454,859
· 강 원 도 립 대 학 운 영	9,927,343	297,820
· 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	223,768,568	6,713,057
· 학 교 용 지 부 담 금	14,799,405	443,982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(채무부담행위사업) :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,924,26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1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
- (1) 공무원 총액인건비
- (2) 차입금 원리금상환
- (3) 공공요금, 제세공과금, 배상금, 법정전출금
- (4) 재해대책 및 복구비